

해외 영화 삽입곡 공연사용료 징수 여부 판단 사건

(2022.5.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861 판결, 항소심 진행 중)



법제지원부 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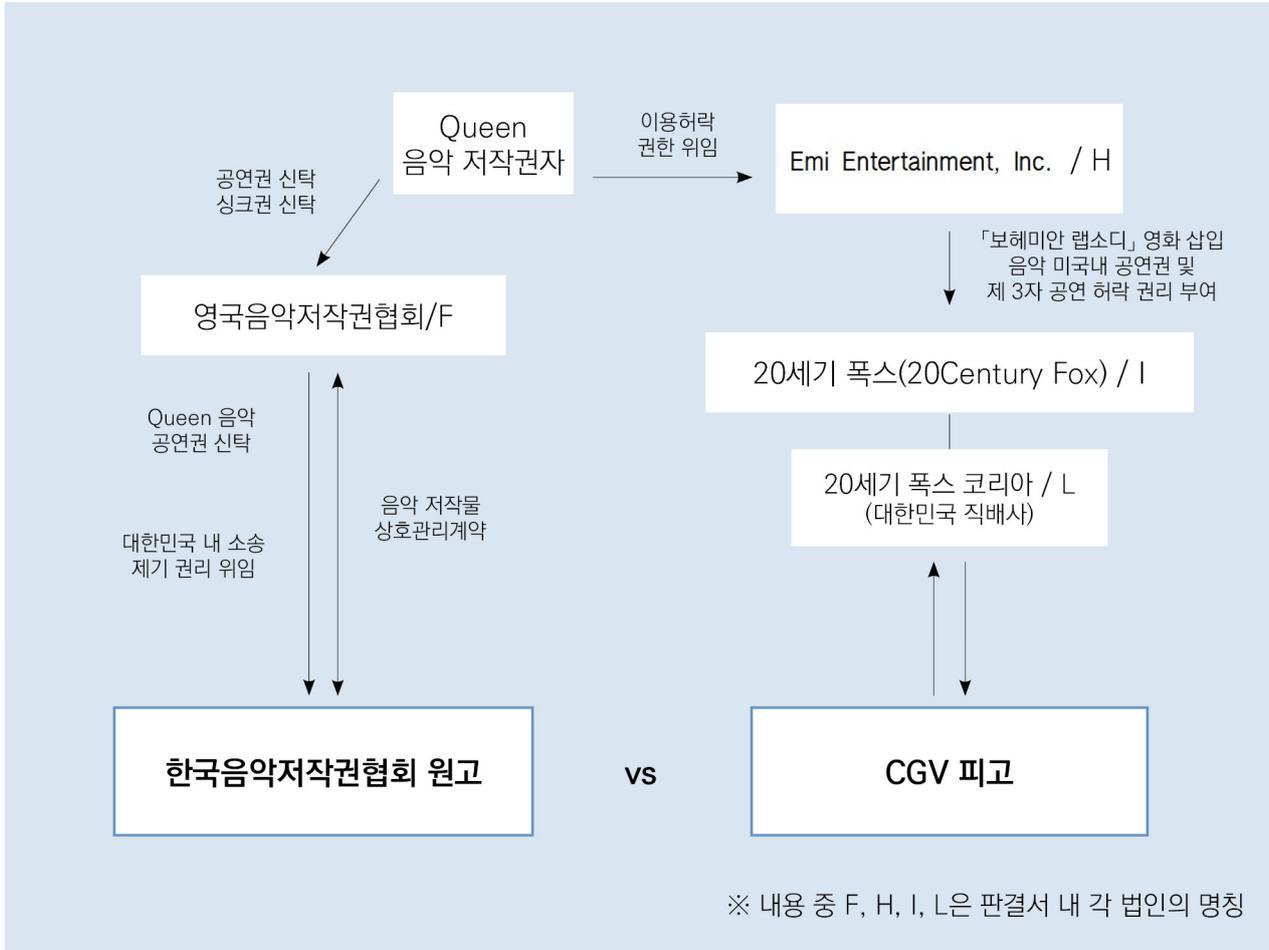
주요 쟁점 해외 영화에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경우 영화를 수입하여 상영한 영화관 사업자가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지

- 판시사항**
- ▶ 영화제작사 20세기 폭스와 EMI측과의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 약정 내용에 따르면 20세기 폭스는 대한민국에서의 공연을 허락할 권한이 없으므로 20세기 폭스의 직배사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는 없음.
 - ▶ 피고와 같은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영화 작품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이미 허락되었다고 보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례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음.
 - ▶ 20세기 폭스와 EMI와의 이용 허락 약정 내용이 특약에 해당하므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시사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이미 원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이용 허락을 하였다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락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영화제작사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때 별도의 특약을 만들었다고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심급	1심 (원심)	2심 (항소심, 확정)
당사자	원고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 : CJ CGV 주식회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48861	2022나2020235
선고일자	2022.5.12.	진행 중
판결결과	원고 승소	진행 중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제20호, 제93조)	

사건의 경과



〈이번 사건 권리관계〉

영국 록 밴드 퀸의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31곡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영상화되었음. 20세기 폭스는 EMI Ent로부터 미국과 미국령 내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의 공연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례적 관행과 관례적 비용의 지불에 따른다’고 정했음.

피고는 20세기 폭스 코리아¹⁾로부터 보헤미안 랩소디를 배급받은 뒤 이를 공개 상영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erforming Right Society for music, 이하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협의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이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협의 없이 해당 영화를 공개 상영하였음.

1) 20세기 폭스 국내 직배사

법원의 판단

1. 주요 법리

- ☐ 권리가 소송물인 경우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권리주체로부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²⁾
- ☐ 음악저작물도 영상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원저작물에 대한 영상화 허락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그 영화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음(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원저작물 저작자가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3)에 따라 저작권자가 이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였다면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저작물⁴⁾을 공개 상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본안 전 판단 (소송 진행 가능 여부)

☐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당사자적격⁵⁾ 여부 (긍정)**

원고와 PRS는 모두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PRS가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연권을 신탁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음악저작자들의 법익의 보호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등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피고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 **피고의 공연권 침해 여부 판단 (긍정)**

피고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영화관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PRS나 원고로부터 위 공연을 허락받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공연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4) 공개 상영이 목적이었던 영상저작물에 한함.

5)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㉔ 피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허락 받았는지 여부 판단 (부정)

20세기 폭스와 EMI와의 이용 허락 약정에 따르면 20세기 폭스가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적 범위는 미국과 미국령으로 제한될 뿐 그 외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⁶⁾, 오히려 미국 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례 적관행이나 관례적 비용의 지불 방식에 따르도록 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이용 허락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20세기 폭스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공연을 허락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미국 외 지역(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PRS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영화가 공개 상영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 공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여 이를 PRS에게 분배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34조 제2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등 이러한 규정이 해외 수입 영화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따라서 국내에서 공개 상영되는 해외 수입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그 영화 작품에 삽입된 음악의 공연이 이미 허락되었다고 보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이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34조 

제34조(영화 사용료)

-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 x 지분율
 - 비고1) 스크린당 곡단가는 13,500원으로 한다.
 - 비고2)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 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 비고3)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한다.
 - 비고4)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아래 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비고1) 별도 영화개봉(공연)시의 공연사용료는 (스크린당 곡단가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 x 지분율로 하고, 위 ①항의 비고1) 내지 비고4)를 준용한다.

㉕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부정)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침해가 일어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면,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인 EMI측이 20세기 폭스로 하여금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영화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6) 피고는 20세기 폭스와 EMI가 체결한 이용 허락 약정에 따른 지역적 범위가 전 세계 지역에 이른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있는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것 또한 허락한 것이라고 추정됨. 그러나 이미 EMI측과 20세기 폭스의 이용 허락 약정상 지역적 범위를 미국 및 미국령 내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의 영화 공개 상영은 허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99조는 적용되지 않음.

☞ 해외 영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부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로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음. 따라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504653 판결 참조)

4. 결론

☞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공개 상영하는 방법으로 영화에 삽입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것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원고로부터 위 행위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사용료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보아 그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할 수 있음.

시사점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하여 저작권자가 영화와 같은 영상에 자신의 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허락하였다면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방송·전송⁷⁾ 등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음.

관련하여 과거 음저협과 CGV의 영화 공연사용료 관련 영상저작물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에서 법원은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 또한 영상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영상저작물 특례가 적용되므로 영화 제작을 위한 이용 허락을 받을 당시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것도 허락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본지의 의견은 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서체목록
KoPubWorld돋움체, KoPubWorld바탕체, 경기천년체

7) 다만 각 영상저작물이 공개 상영, 방송, 전송 등 제작된 목적대로 이용되었을 경우에만 추정됨.